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 개정(2023. 3. 28, 법률 제19289호)되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 없이 선(先) 사용한 경우가 부정경쟁행위의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 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시행령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규정을 직접 열거방식에서 인용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가 신설될 때 마다 시행령 후속 입법을 진행해야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시행령에 명시된 행정제재 가중처분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아울러 수거증 내 문의처 등 별지 서식에 기재된 업무 담당 부서를 현행화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부정경쟁행위 적용 예외 조문 정비(안 제1조의2제3호 삭제)

1)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

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이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온 자가 이를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토록 하는 조문이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기존 시행령의 조문 삭제

나. 행정조사 대상 조문 정비(안 제1조의4제1항 수정)

- 1) 행정조사 대상을 법조문의 직접 열거방식에서 법률 제7조제1항을 인용하도록 변경

다. 행정제재의 가중처분 적용 기준 명확화(안 별표2 제1호다목 신설, 별표4 제1호나목 신설)

- 1)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의 다음 차수로 규정
- 2) 적발된 날로부터 특정기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를 정할 때 반영 대상에서 제외
- 3) 타 법령과의 정합성을 갖추기 위하여 문구 정비

라. 별지 서식에 기재된 담당 부서 현행화(안 별지 제1·3·5호 서식 수정)

- 1) 별지 제1호서식 내 문의처를 “산업재산보호과”에서 “부정경쟁조사팀”으로 변경
- 2) 별지 제3호서식 및 제5호서식 내 처리절차 담당 부서를 “산업재산보호정책과”에서 “산업재산분쟁대응과”로 수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련 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00.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제2조제1호다목”을 “제2조제1호다목3)”으로 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제1조의4제1항 중 “관계 서류나 장부·제품”을 “관계 자료나 제품”으로 하고, “제2조제1호(아목과 카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를 “제7조제1항에 정하는 행위의 위반여부를”로 한다.

별표2 제1호나목 중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는”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으로 하고,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 적용은 행정처분일과”를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로 한다.

별표2 제1호다목과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4 제1호가목 중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를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로 하고,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 한다.”를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4 제1호나목과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5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산업재산보호과”를 “부정경쟁조사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산업재산보호정책과”를 “산업재산분쟁대응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산업재산보호정책과”를 “산업재산분쟁대응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정당한 사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조의2(정당한 사유) -----		

		----- 제		
		2조제1호다목3)-----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이하 “표지”라 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에 그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온 자(그 승계인을 포함한다)가 이를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하는 경우		3. 삭제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1조의4(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제1조의4(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① 특허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제품 등을 조사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 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법 제2조제1호 (아목과 카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별표 2]

1. 일반기준

가. (생략)

나.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 적용은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방법 등) ① -----

----- 관계 자료나 제품 -----

----- 제7조제1항에 정하는 행위의 위반여부를 -----.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별표 2]

1. 일반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

-----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

다. (생략)

라. (생략)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별표 4]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 한다.

<신설>

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라. (현행 다와 같음)

마. (현행 라와 같음)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별표 4]

1. 일반기준

가. -----

---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
-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u>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5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u>
<u>나.</u> (생략)	<u>다.</u> (현행 나와 같음)
<u>다.</u> (생략)	<u>라.</u> (현행 다와 같음)

행정처분 기준(제3조의5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 중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 라. 행정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법 제9조의4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취소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2차	3차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9조의4 제3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법 제9조의4	지정취소		

부분 본문에 따라 원본증명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원본증명업무를 한 경우 다.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원본증명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원본증명업무를 중단한 경우	제3항제2호 법 제9조의4 제3항제3호	경고	지정취소	
라. 법 제9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의4 제3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6개월
마. 법 제9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의4 제3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6개월
바.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의4 제3항제5호	경고	지정취소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5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

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조사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1) 관계 공무원의 영업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영업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500	1,000	2,000
2) 영업장 내의 증거품을 반출하거나 숨기거나 인멸하는 등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200	400	800
3)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장을 이탈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경우		100	200	400
4)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조사 확인이나 조사에 필요한 제품의 수거를 거부하는 등 기피행위를 한 경우		50	100	200

나. 법 제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시 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2호	300	600	1,200
--	------------------	-----	-----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9. 18.>

제 호 수 거 증 사업소(영업소)명: 소재지: 사업자 성명:					
수 거 물 품 명 세					
상 표	제 품	수 량	상 표	제 품	수 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품을 수거하오니 이 수거제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년 월
 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거자 소 속: (전화:)
 직 명:
 성 명: (서명 또는 인)

1. 위 수거제품에 대한 검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돌려 드립니다.
2.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전화번호)(시·도, 시·
 군·구의 경우에는 관할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본증명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개월
신청인	상호(또는 명칭)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원본증명업무의 종류 및 내용

원본증명업무 제공 대상 또는 지역

주요 장비의 개요 및 설치장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허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각 호에 따른 전문인력 및 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원본증명기관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원본증명기관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		

원본증명기관 업무인계 불가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개월
신 고 인	상호(또는 명칭)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계 불가 사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인계할 수 없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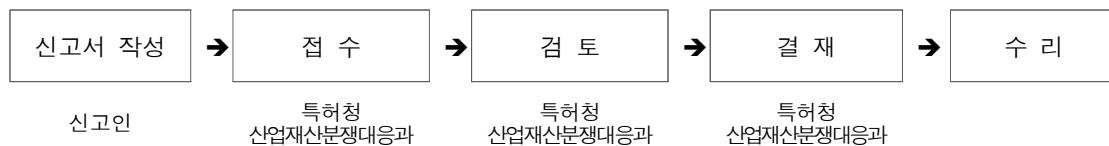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허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인계 불가 사유서 1부 2.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 및 그 목록 1부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의안 소관 부서명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5967